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27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임성준(기소), 전유경(공판)
판 결 선 고 2026.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3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B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C' 온라인 게임의 프로그램을 위·



변조한 이른바 '사설서버'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25. 2. 6.경부터 2025. 6. 초순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인터넷 주소를 통해 사설서버를 구축할 수 있는 서버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은 뒤 'E'라는 호스팅 업체를 통하여 위 게임의 사설서버인 'F'를 구축하고(서버 IP (IPV4 1 생략).), 'G' 채널(인터넷주소 1 생략)에 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 불특정 이용자들이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는 방식으로 위 'F' 서버에 접속하여 'C'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사설서버 이용자가 게임 재화의 이용을 요청하면 이를 생성해 주는 대가 내지 게임이용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3,130,000원을 제공받아 이를 수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B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5. 2. 6.경부터 2025. 6.초순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에 저작권자인 피해자 (주)B가 제공하는 온라인게임인 'C'의 사설서버인 'F'를 개설하고, 위 게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그 프로그램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는 등 일부를 변형한 다음 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G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이용자들이 하여금 위 서버에 접속하여 'C'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주)B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채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다운로드, 'F' 서버 개설일 관련 공지사항, 후원금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안내, 송금확인증(I), 서버 접속아이피,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증, I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미제공·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각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피해자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인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 수법과 내용,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현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0

범 죄 일 랑 표

순번	교부받은 일시	교부받은 금액(원)	송금인	교부받은 I 계정
1	2025. 2. 8. 17:06	100,000	<삭제처리>	피고인 명의의 I 계정 (Account ID: J)
2	2025. 2. 9. 03:13	50,000		
3	2025. 2. 9. 14:11	20,000		
4	2025. 2. 9. 15:16	30,000		
5	2025. 2. 9. 15:26	50,000		
6	2025. 2. 10. 22:45	30,000		
7	2025. 2. 11. 13:23	20,000		
8	2025. 2. 11. 17:31	100,000		
9	2025. 2. 12. 05:42	60,000		
10	2025. 2. 12. 10:12	100,000		
11	2025. 2. 21. 21:26	20,000		
12	2025. 2. 22. 02:04	30,000		
13	2025. 2. 23. 17:04	125,000		
14	2025. 2. 23. 17:32	100,000		
15	2025. 2. 25. 19:32	10,000		
16	2025. 3. 3. 20:57	30,000		
17	2025. 3. 25. 21:43	150,000		
18	2025. 3. 25. 21:54	30,000		
19	2025. 4. 7. 17:12	200,000		
20	2025. 4. 7. 17:24	50,000		
21	2025. 4. 7. 17:40	50,000		
22	2025. 4. 8. 09:48	300,000		
23	2025. 4. 10. 19:38	200,000		
24	2025. 4. 11. 22:38	150,000		
25	2025. 4. 13. 01:45	200,000		
26	2025. 4. 14. 01:28	50,000		
27	2025. 4. 23. 16:02	225,000		
28	2025. 4. 23. 16:14	20,000		
29	2025. 5. 11. 16:17	100,000		
30	2025. 5. 25. 15:48	200,000		
31	2025. 5. 25. 21:11	30,000		
32	2025. 5. 30. 22:19	300,000		
합계		3,130,000		